#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5

발의연월일: 2021. 4. 13.

발 의 자:김성주・문진석・박상혁

양정숙 • 이용빈 • 이용호

임호선 · 최혜영 · 한병도

허종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,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,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,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,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·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,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.

실제 재단 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(개도국의료인력 중장기연수사업), 개발도상국 병원운영컨설팅 등 유무상 연계사업,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사업, 의료시설융합 관련 사업, 아리랑요양원 운영 및 사할린잔류 1세대 의료지원 사업, 외국인근로자

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됨.

또한 2020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국외 현지에서 리더십을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, WHO 총회 및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등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.

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,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(안 제8조제2항).

#### 법률 제 호

#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사무총장을"을 "이사장 및 사무총장을"로, "이사장 및 임원은"을 "임원은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원) ① (생 략)	제8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사무총장을</u> 겸임하는 이사	②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
를 제외한 <u>이사장 및 임원은</u>	임원은
비상근으로 한다.	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